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,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031호, 2026. 8. 27. 시행)됨에 따라,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「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,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(제5조의2, 제5조의3 개정)
- 나.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(법 제6조 → 개정안 제5조)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(제5조의4 신설)
- 다.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, 생산자단체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(제5조의5 신설)
- 라.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(제7조 신설)

- 마.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,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, 경영비의 구성 요소,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(제14조의2 신설)
- 바.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차액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, 계약거래·자조금 납부 등 수급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(제14조의3 신설)
- 사.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조금 납부, 경작·출하 신고,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제14조의4 신설)
- 아.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, 소집·개의·의결조건, 필요시 전문가 등 출석, 수당·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(제14조의5 신설)
- 자.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(제37조 개정)
- 차.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(별표2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처와 협의 중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협의 중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”으로 한다.

3의2. 「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임직원·대의원

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법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·공급지원사업의 실행에 관한 사항
3. 수급상황에 따른 주산지간 재배면적 조정 및 출하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2. 「농수산물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자
 조금단체의 대표·임직원

③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·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2. 품목별 수급관리방안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급관리를 위
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종전의 제7조를 제5조의4로 하고, 제5조의4(종전의 제7조)의 제목 “(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)”를 “(생산자 관련 단체)”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7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제1항”을 “법 제5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5인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5(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5조의3에 따른 농
 산물 수급관리센터(이하 “수급관리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
 를 수행한다.

1. 시·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 지원
2. 농산물의 수급 동향 조사 및 분석

3. 법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·공급지원사업의 실행지원에 관한 사항

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5. 그 밖에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,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수급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의3제2항”을 “법 제5조의6제2항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계약거래의 지원 등)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“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각 호와 같다.

1.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 지원

가. 계약거래 농산물의 생산량 또는 출하량 조정

나. 계약거래 농산물의 조기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출하 시기 조정

다. 계약거래 농산물의 판매처 변경

라. 계약거래 농산물의 가공용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축용으로의 용도 전환

마. 계약거래 농산물의 산지폐기

2. 생산관리 등 그 밖에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, 지원금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)”을 “(수급불안 시의 농산물 수매 및 처분)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기준가격의 산정)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”이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,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경영비의 구성 요소,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의3(대상 품목의 선정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예산의 규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
2. 법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및 「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등 해당 품목의 수급관리 체계 구축 여부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의4(차액지급에 대한 조건)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“「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·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「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
2. 「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 및 출하신고
3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의5(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회의에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2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3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제38조에 따른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38조 관련)

1. 일반기준 (현행과 같음)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(현행과 같음)	법 제90조제1항제1호	250	500	1,000
나.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	법 제90조제3항제1호	25	50	100
다.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(任免)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2호	12	25	50
라. 법 제29조제5항(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3호	25	50	100
마.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(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4호	25	50	100
바. 매수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2항제1호	125	250	500
사. 매도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4호의2	25	50	100
아. 매수인이 법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물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경우	법 제90조제1항제2호		1,000	

<u>자.</u> 법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·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경우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)	법 제90조제3항제5호	25	50	100
<u>차.</u>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경우	법 제90조제2항제2호	125	250	500
<u>카.</u>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5호의2	25	50	100
<u>타.</u>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	법 제90조제2항제3호	125	250	500
<u>파.</u>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(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)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6호	25	50	100
<u>하.</u>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7호	25	50	1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주산지협약체의 구성 등) ① (생략) ② 협의회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·5. (생략)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의2(주산지협약체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「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임직원·대의원</u> 4.·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협의회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 <u>1.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실행 계획에 관한 사항</u> <u>2. 법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정 생산·공급지원사업의 실행에 관한 사항</u> <u>3. 수급상황에 따른 주산지간 재배면적 조정 및 출하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</u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
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
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
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
장관이 정한다.

제5조의3(중앙주산지협의회 의 구성 등)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
따른 중앙주산지협의회(이하
“중앙협의회”라 한다)는 20명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
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3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4.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
서 농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하
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사항

⑤ ----- 제4항-----

-----.

제5조의3(중앙주산지협의회 의 구성 등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농수산물자조금 조성 및 운
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대표·
임직원

3.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
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. <u>제7조(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)</u> 법 제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1. 2. (생략) 3.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·가공·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<u>5인</u>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	1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·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. 품목별 수급관리방안 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. <u>제5조의4(생산자 관련 단체) 법 제5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명</u> ----- ----- -----
--	---

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

4. (생략)

<신설>

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5(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
설치·운영) ① 법 제5조의3에
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(이하
“수급관리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시·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
수립 지원

2. 농산물의 수급 동향 조사 및
분석

3. 법 제5조의2에 따른 농산물
안정 생산·공급지원사업의
실행지원에 관한 사항

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5. 그 밖에 농산물의 안정적 수
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
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업무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농
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,
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수급

제6조(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업무의 위탁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(이하 “종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의 구축·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수급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6조(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업무의 위탁 등) ① -----

--- 법 제5조의6제2항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계약거래의 지원 등)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“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각

호와 같다.

1.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 지원

가. 계약거래 농산물의 생산량 또는 출하량 조정

나. 계약거래 농산물의 조기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출하 시기 조정

다. 계약거래 농산물의 판매처 변경

라. 계약거래 농산물의 가공용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축용으로서의 용도 전환

마. 계약거래 농산물의 산지폐기

2. 생산관리 등 그 밖에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, 지원금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

제10조(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10조(수급불안 시의 농산물 수매 및 처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기준가격의 산정) ①

법 제16조의2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”이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, 생산량 등 수급 상황을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경영비의 구성 요소,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의3(대상 품목의 선정) 농

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예산의 규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

<신 설>

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

2. 법 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 및 「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등 해당 품목의 수급관리 체계 구축 여부

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4(차액지급에 대한 조건)

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“「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·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「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

2. 「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 및 출하신고

3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

<신 설>

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
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
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
이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
다 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의5(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
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농산
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(이하 이
조에서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
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
만, 공무원인 위원인 임기는 그
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
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
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
의장이 된다. 위원장이 부득이
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
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
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
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
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
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
로 의결한다.

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

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회의에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2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제3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<신 설>

①·② (생략)

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8조 관련)

1. 일반기준 (생략)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		
		1회	2회	3회 이상
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농업축산식품부장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의3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②·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
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8조 관련)

1. 일반기준 (현행과 같음)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		
		1회	2회	3회 이상

가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90조제1항제1호	250	500	1000
나.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(任免)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1호	12	25	50
다. 법 제29조제5항(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2호	25	50	100
라.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(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3호	25	50	100
마. 매수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2항제1호	125	250	500
바. 매도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3호의2	25	50	100
사. 매수인이 법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경우	법 제90조제1항제2호		1000	
아. 법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·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경우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)	법 제90조제3항제4호	25	50	100
자.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경우	법 제90조제2항제2호	125	250	500
차.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4호의2	25	50	100

가. (현행과 같음)	법 제90조제1항제1호	250	500	1,000
나.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	법 제90조제3항제1호	25	50	100
다.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(任免)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2호	12	25	50
라. 법 제29조제5항(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3호	25	50	100
마.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(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4호	25	50	100
바. 매수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2항제1호	125	250	500
사. 매도인이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4호의2	25	50	100
아. 매수인이 법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경우	법 제90조제1항제2호		1000	
자. 법 제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·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경우(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)	법 제90조제3항제5호	25	50	100
차.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경우	법 제90조제2항제2호	125	250	500
카.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90조제3항제5호의2	25	50	100

가.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	법 제90조제2항 제3호	125	250	500
타.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(공판장 및 민영도매 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)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 제5호	25	50	100
파.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 제6호	25	50	100

타.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	법 제90조제2항 제3호	125	250	500
파.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(공판장 및 민영도매 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)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 제6호	25	50	100
하.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90조제3항 제7호	25	50	1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245